

제1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제2차 본회의 2007. 7. 2(월)

「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거 창 군 의 회
(산업건설위원회)

〔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〕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7년 6월 18일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07년 6월 19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7년 6월 26일
- 마. 의안번호 : 제2007 - 14호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경제과장 이 동 순)

가. 제안이유

- 2005. 7. 27.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6조 제1항의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「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14조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명 앞뒤 낫표(「」)를 사용하여 구분되게 함
(제명, 안 제1조, 제3조 제2항, 제5조 제1항, 제7조 제1항, 제9조 제1항 및 제2항, 제9조 제1항 제1호,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, 제16조 제2항, 부칙 제3항 및 제4항, 제2항)

○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(안 별표2)

시 설 물		설 치 기 준	
현 행	개 정	현 행	개 정
4.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	4. 단독주택(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)	○ 시설면적 130㎡ 초과 200㎡ 이하의 경우: 1대 ○ 시설면적 200㎡ 초과인 경우에는 1대에 200㎡를 초과하는 130㎡당 1대를 더한 대수(4가구 이상시세대당 1대)	○ 시설면적 100㎡ 초과 130㎡ 이하 : 1대 ○ 시설면적 130㎡ 초과 : 1대에 130㎡를 초과하는 100㎡당 1대를 더한 대수 $[1 + \{(시설면적 - 130㎡) / 100㎡\}]$
5. 공동주택(다세대주택·기숙사를 제외한다)	5.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(기숙사를 제외한다),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	○ 시설면적 100㎡당 1대, 세대당 1대 중 많은 것	○ 「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」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○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. ○ 다만, 8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가구당 1대로 하되 산정된 주차대수와 비교하여 많은 대수를 적용한다.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(전문위원 : 김 종 목)

가. 동 조례안은

○ 「주차장법 시행령」에 의한 부설 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1999. 6. 30 일부개정 이후, 2004. 2. 9, 2004. 6. 29, 2005. 7. 27. 등 3차례에 걸쳐 시설물 종류와 설치기준이 조금씩 개정됨에 따라,

- 지난 1998. 2. 11 조례개정 이후 한번도 개정하지 않은 현행 「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 제14조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

- [별표2]거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중 제4호,
 - 시설물 종류에서 단독·다세대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개정하였으며, 설치기준에서 단독주택 시설면적 130㎡초과 200㎡이하 1대에서 100㎡초과 130㎡이하에 1대로 개정한 것임 (※ 1대당 주차장면적 : 가로2.3m×세로5m = 11.5㎡)
 - 이는 「주차장법 시행령」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령이 허용한 범위(50㎡초과 150㎡ 이하에 1대)내에서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법한 개정안으로 보임.
 - 그러나, 하한선을 100㎡초과로 개정한 것은 건축법상 건축연면적 100㎡이하는 신고대상, 이상은 허가대상이며 용자주택 규모도 100㎡이하를 적용하므로 적정한 면적으로 사료되나, 상한선을 130㎡이하로 규정한 것은 시행령에서 50㎡초과 150㎡이하 1대로 규정되어 있고,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200㎡이하도 종전의 시행령에 규정된 면적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, 붙임 참고자료에 있는 다른 시군의 조례규정내용 등을 감안하더라도

130m²이하로 강화한데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⇒ 따라서, 하한선은 100m² 초과로 하되 상한선은 150m² 이하로 시행령에서 규정한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

[별표2]제4호 설치기준 수정의견

원 안	개 정 안	수 정 의 견
○시설면적 <u>130m²초과</u> <u>200m²이하</u> 의 경우: 1대	○시설면적 <u>100m² 초과</u> <u>130m² 이하</u> : 1대	○시설면적 <u>100m² 초과</u> <u>150m² 이하</u> : 1대
○시설면적 <u>200m²초과</u> 의 경우에는 1대에 200m ² 를 초과하는 130m ² 당 1대를 더한 대수(4가구 이상시 세대당 1대)	○시설면적 <u>130m² 초과</u> : 1대에 <u>130m²</u> 를 초과하는 100m ² 당 1대를 더한 대수 [1+{(시설면적-130m ²)/100m ² }]	○시설면적 <u>150m² 초과</u> : 1대에 <u>150m²</u> 를 초과하는 100m ² 당 1대를 더한 대수 [1+{(시설면적-150m ²)/100m ² }]

○ 제5호,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100m²당 1대에서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도록 개정된 것은 「주차장법 시행령」의 규정대로 수용한 것이며,

- 8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가구당 1대로 하되 산정된 주차대수와 비교하여 많은 대수를 적용토록 규정한 것은,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상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

(세대당 전용면적이 60m²이하는 0.7대)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, 우리 군의 경우 차량대수가 해마다 증가하고, 시내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공간의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원룸, 연립주택 등 8가구 이상의 건물은 세대당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가구당 1대 기준으로 강화한 것으로 검토됨.

- 한편, 「주차장법 시행령」에 의한 “부설 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”이 1999. 6. 30 일부개정 이후, 2004. 2. 9, 2004. 6. 29, 2005. 7. 27. 등 4차례에 걸쳐 조금씩 개정되어 전반적으로 완화되어 왔으므로 「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도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그때그때 개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98년 이후 현재까지 조례를 정비하지 않은 사유와,
- 이로 인해 「주차장법 시행령」상의 주차장설치기준과 조례상에 규정된 설치기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, 이와 관련한 민원은 그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- 나머지 개정사항은 법령명 제명 띄어쓰기와 낫표(「) 표시 등 자구를 정리한 사항이며, 지난 4월 11일 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고,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수정안 요지

가. 발의자 : 산업건설위원회

나. 수정이유

- 별표2 거창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종류와 설치 기준중 제4호 단독주택 설치기준에서 시설면적 상한선을 130㎡이하로 할 경우, 현행조례상 상한선이 200㎡이하로 규정되어 있고, 주차장법 시행령에서도 상한선을 150㎡이하로 되어있는 만큼, 다소 과도한 규제로 주민 불편이 우려되므로 상한선을 150㎡로 수정하고자 함.

다. 수정내용

[별표2] 제4호 설치기준 수정안

원안	개정안	수정안
○시설면적 <u>130㎡</u> 초과 <u>200㎡</u> 이하의 경우: 1대	○시설면적 <u>100㎡</u> 초과 <u>130㎡</u> 이하 : 1대	○시설면적 <u>100㎡</u> 초과 <u>150㎡</u> 이하 : 1대
○시설면적 <u>200㎡</u>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㎡를 초과하는 <u>130㎡</u> 당 1대를 더한 대수(4가구 이상시 세대당 1대)	○시설면적 <u>130㎡</u> 초과 : 1대에 <u>130㎡</u> 를 초과하는 100㎡당 1대를 더한 대수 [1+{(시설면적-130㎡)/100㎡}]	○시설면적 <u>150㎡</u> 초과 : 1대에 <u>150㎡</u> 를 초과하는 100㎡당 1대를 더한 대수 [1+{(시설면적-150㎡)/100㎡}]

7. 심사 결과 : 수정 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